**삼성 「기회균등 특별채용」 모집요강**

**1. 자격 요건 (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)**
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한부모

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기준 중위소득 50%/60%

이하에 해당하는 자

②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 마인드와 성실함으로 극복해내고,

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강한 대학생

③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

④ 인문계 전공자는 OPIc IL / 토익스피킹 5급 이상,

이공계 전공자는 OPIc NH / 토익스피킹 4급 이상 보유자

(어학성적 유효기간 : 2년)

**2. 전형절차 및 일정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절 차** | **일 정** |
| 추천마감 | 9.10(목)까지 |
| 지원서 접수 | 9월초 회사별 채용공고 참조 |
| 직무적합성평가 | 9월中 |
| 삼성직무적성검사 | 10~11월中 |
| 면 접 | 11월中 |
| 채용건강검진 | 12월中 |
| 입 사 | 2021년 1~2월中 |

※ 모든 전형은 前단계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.

**3. 추 천 인 :** 지도교수님

**4. 추천기간** : 9.10(목) 까지

**5. 추천방법**

- 이메일을 통해 추천 접수 : **recruit@samsung.com**

- 접수시 필요 문서

① 추천서 (스캔본)

② 재학증명서, 어학증명서 (스캔본)

③ 기회균등 특별채용 대상자 증명서 (스캔본) ※ 별첨기준 참조

④ 추천자 명단 (엑셀양식)

※ 원본은 지원자가 면접 참석시 직접 지참하셔야 하며,

면접장에서 확인 후 반납합니다.

**6. 추천서 작성 안내**

- 교수님께서 추천하시고자 하는 학생과 면담하신 후

배포된 추천서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.

- 추천사유는 아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인생관/가치관, 리더십, 의지력 等 기본인품

② 대학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례

③ 회사와 사회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

**7. 기타사항**

- 기회균등 특별채용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용담당부서 外에는

알 수 없으며, 입사 後에도 평가, 승격 等에 어떠한 영향도

미치지 않습니다.

**[별첨] 기회균등 채용대상자 증빙서류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지원유형** | **제출서류** | | **발급처** |
| 기초생활수급자 | ·수급자 증명서  ·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·한부모가족 증명서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법정차상위계층 | ·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·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| | 국민건강 보험공단 |
| ·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·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·차상위계층 확인서(구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) | | 구청/  동주민센터 |
| 기준 중위소득60% 이하  (구 차차상위계층) | 공통 | ·주민등록등본,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·(미혼 형제자매가 소득활동 시) 형제자매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류  ·(형제자매 기혼 시) 혼인 증빙 서류 | 국민건강  보험공단  (관할지사) 동주민센터 |
| 지역건강보험료 | ·건강보험증 사본 1부  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1부  ※ 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中 택1 | 국민건강  보험공단  (관할지사) |
| 직장건강보험료  또는  직장건강보험료  혼합(지역+직장) | ·건강보험증 사본 1부  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1부  ※ 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中 택1  ·재산세 과세증명서  (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 1부  ※ 반드시 세목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| 국민건강  보험공단  (관할지사) 동주민센터 |

※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必

※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(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불가)

※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
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